

한화시스템 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2025년 하반기 개정판)

Part 2-2.
공정거래법 해설
(부당공동·불공정거래행위 외)
관련 부서: 기획·재무

Copyright © 2025 Hanwha Systems Co., Ltd.
All rights reserved.

사전 안내 사항

본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은 한화시스템(주)의 모든 임직원들이 회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와 연관된 공정거래 법규들을 사전에 스스로 확인하고 준수하여 회사와 임직원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공정거래 이념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사와 연관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들의 내용을 총 망라하여 정리한 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교과서이자 지침서입니다.

회사의 모든 임직원분들은 업무 수행 시 사전에 본 자율준수 편람을 활용하시어 해당 업무가 공정거래 법규 저촉 사항은 없는지, 사전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업무 수행 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편람을 참고하시되, 상세 업무 추진은 반드시 회사 공정거래 담당 부서 등 유관부서와 협의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INDEX

Part. I. 공정거래법 해설

01 공정거래법 해설

- 1.1. 공정거래법 개관
- 1.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규제
- 1.3. 부당 기업결합의 제한
- 1.4.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02 M&A 관련 공정위 시정명령 준수

- 2.1. 공정위 시정명령의 내용
- 2.2. 공정위 시정명령 위반 시의 제재
- 2.3.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체크리스트

Part. II. 공정거래 관련 법규 안내

01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규



I. 공정거래법 해설

1. 공정거래법 해설

- 1.1. 공정거래법 개관
- 1.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규제
- 1.3. 부당 기업결합의 제한
- 1.4. 계열사간 상호출자 금지

2. M&A 관련 공정위 시정명령 준수

- 2.1. 공정위 시정명령의 내용
- 2.2. 시정명령 이행 위반시의 제재
- 2.3. 시정명령 이행 체크리스트



1. 공정거래법 해설

1.1. 공정거래법 개관

1.1.1. 공정거래법의 의의

- 정식 명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목적
 -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
 -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를 통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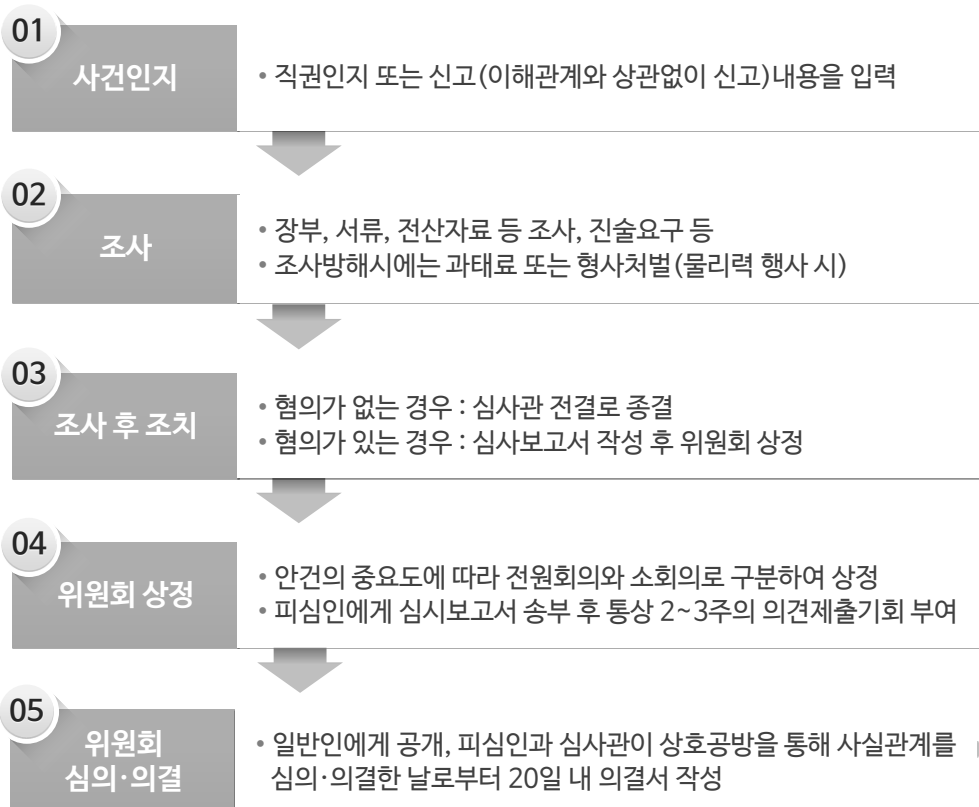
1.1.2. 공정거래법의 구조

- 공정거래법은 ‘시장 구조’의 측면과 ‘거래 행태’의 측면에서 사업자를 규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예1) ‘시장구조’를 규율: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제9조(기업 결합의 제한)

예2) ‘거래행태’를 규율: 법 제5조(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

1.1.3. 공정거래 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조사 및 심사 절차



• 불복 시
- 의견서 송달일로부터 30일 내 이의신청
-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



1. 공정거래법 해설

1.1. 공정거래법 개관

1.1.4. 공정거래 위원회의 조치 유형

-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조치할 수 있는 유형으로 재심사명령, 심의절차종료, 무혐의, 종결처리, 조사 등 중지,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고발이 존재
-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조항 중 제124조와 제125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고발권 존재
 - 위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 제기 가능
 -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정위는 검찰총장에게 이를 의무 고발하여야 함
 - 검찰총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 공정거래법 제129조

- ①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사업자 단체는 해당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외
 - 부당공동행위, 보복조치 등 특정 규정 위반 시 실 손해의 3배 미만 범위 내 손해배상 책임 부담



1. 공정거래법 해설

1.1. 공정거래법 개관

1.2. 공정거래법과 이해관계자

- 공정거래법상 당사 이해관계자는 정부, 주주, 고객, 협력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각 유형별 이해관계자 및 당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 조항, 당사의 법 위반으로 이해관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다음과 같음

구분	예시	준수 필요 사항	발생 가능 피해
정부	공정위		-
주주	당사 주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일감몰아주기, 통행세 상호출자 제한 규제	• 대외 이미지 하락, 주가 하락 등 따른 금전적 피해
고객	방사청, 국과연, 계열사 포함 전체 매출 거래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일감몰아주기, 통행세 법 위반 행위의 시정 법 위반 시 조사협조 등	• 대외 이미지 하락, 주가 하락 등 따른 금전적 피해 • 공정거래법상 처벌 ✓ 형사처벌, 과징금, 과태료, 시정조치 공표 ✓ 영업정지, 공공입찰 참가 제한 등 •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금전적·업무적 피해
협력사	계열사 포함 전체 매입 거래처		
기타	공정거래조정원	CP 등급평가 규정	• 허위·부실 평가에 따른 대외 이미지 하락



1. 공정거래법 해설

1.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규제

1.2.1. 기업집단의 의의

- 의미: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사람 또는 회사)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함
- 기업집단의 범위
 - 동일인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 동일인이 다른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 간에 임원겸임 등 인사교류가 있는 경우
 -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 기업집단 규제 개관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 (주식소유현황 등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매년 4월 말까지 해당회사의 국내회사 주식소유 현황,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수 등에 대하여 신고
-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는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공정위는 공인 회계사의 감사의견에 따라 수정한 대차대조표를 사용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자금/유가증권, 자산거래, 상품/용역/거래 금액이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거래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
-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1. 공정거래법 해설

1.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규제

1.2.1. 기업집단의 의의

- 기업집단 규제 개관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는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안됨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 관련 채무보증이나,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한 채무보증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기업집단 지정 요건

상호출자제한/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직전년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비 금융·보험회사)
+ 자본총액과 자본금 중 큰 금액(금융·보험회사) ⇒ 5조원 이상



1. 공정거래법 해설

1.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규제

1.2.2. 대규모 내부거래의 공시(공시의 주체)

-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주체
 - 공시주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매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정책과)에서 지정
 - 공시주체는 회사가 되므로 회사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은 공시의무 없으며, 회사에는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포함
 - 연도 중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신규 편입된 회사는 편입 통지일 부터 적용

▶ 내부거래 공시 주체 관련 공정거래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① 제31조 제1항의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 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

시행령

제38조(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은 해당 기업 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내부거래 공시 대상 회사”라 함은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1. 공정거래법 해설

1.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규제

1.2.3.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거래 유형)

■ 적용 대상 거래 유형

-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필요한 내부거래의 유형은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가 있음

(1) 자금거래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거래하는 행위

(2) 유가증권 거래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중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포함함

(3) 자산거래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여기에서 자산은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말하며,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부동산의 임대차거래를 포함함

(4) 상품 또는 용역 거래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계된 경상적 거래로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상품·용역거래인 경우 양 당사자 모두 상품·용역거래로 공시

- * 생산된 제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용역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계열회사 용도의 사무실·공장 등을 건축, 계열회사 제품의 운송 등 물류업무, 계열회사의 전산시스템 구축, 계열사의 상품·기업 브랜드 광고를 의뢰 받아 제작 및 집행하는 업무 등)



1. 공정거래법 해설

1.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규제

1.2.4. 대규모 내부거래의 공시(적용 대상 거래 상대방 등)

- 공시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 자금/유가증권/자산거래시
 - 자금 · 유가증권 · 자산을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거래하고자 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해야 함
 - 특수관계인의 범위
 - ✓ 동일인(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즉 그룹 총수)
 - ✓ 동일인 관련자
 - 동일인 배우자, 4촌이내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동일인 법인인 경우 해당 없음)
 -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 · 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합하여 최다 출연자이거나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단체
 -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임원구성·사업운용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계열회사*)
 - * 공정거래법 제2조 제12호에서는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 계열사로 규정하고 있음(국외계열사와 거래는 이사회 의결공시의무 유예)
 -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계열회사의 사용인
 - 법인의 경우 임원, 개인인 경우 상용 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
 - ✓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
 -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 또는 채권을 비계열사를 통하여 매입하는 경우 등
- 공시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 상품/용역거래시
 - 상품 · 용역을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거래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를 위하여 거래하고자 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해야 함
-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회사 계열회사의 범위
 -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이하 “A”)
 - A가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상법상 자회사(이하 “B”)
 - A와 B간 상품용역거래 시 A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없음(단, B가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지분 20% 미만인 계열사일 경우)
 - 국외계열사와의 거래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유예)



1. 공정거래법 해설

1.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규제

1.2.5. 대규모 내부거래의 공시(적용 대상 거래의 기준, 공시 시기 및 내용, 위반시 제재)

- 적용대상 거래
 - 적용대상거래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유가 증권,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서 거래금액이 당해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이 100분의 5 이상(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대규모내부거래 행위를 말함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의 경우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의미).
 - 자본총계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본 총계를 기준으로 하며, 자본금은 이사회 의결일 전일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함
 - 적용대상거래는 특수관계인을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으로 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도 포함
- 대규모 내부거래로 보지 않는 경우
 - 공시대상 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로서 새로운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
 - 채권 · CP매입 또는 장단기 차입 후 이를 만기 상환하는 경우
 - 상품 · 용역 및 금융거래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할부 금융이나 카드결제
 -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거래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행위
 - 주식을 계열증권사를 통해 장내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다만, 장 종료 후 시간외거래는 공시대상)
- 공시시기 및 내용
 - 공시시기: 이사회 의결 후 상장법인은 1일 이내, 비상장 법인은 7일 이내
 - 공시내용: 거래의 목적 및 대상, 거래의 상대방, 경쟁입찰·수의계약 등 계약체결방식(상품·용역 거래에 限), 거래금액 및 조건, 거래상대방과 동일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등 주요내용
- 위반 시 제재
 - 시정조치: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등의 시정조치 가능
 - 과태료: 공시의무 미이행이나 주요내용의 누락 또는 허위 작성 및 공시 시 과태료를 부과 가능



1. 공정거래법 해설

1.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규제

1.2.5. 대규모 내부거래의 공시(2024년 법규 개정사항)

-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2024.08.07. 시행)

1)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으로서 신속하게 자진시정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을 마련

- ① 신규 기업집단 지정. 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 ②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 ③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공시내용에 오인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등은 과태료를 면제 가능
- ④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게는 과태료가 면제 불가

2) 공시기한이 10일 이내로 짧은 공시항목에 대하여 영업일 개념을 도입하여 공시기한을 설정하고,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상 상장회사의 공시기간을 1일 → 3영업일로 변경

3)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내용이 공정거래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 하위규정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



1. 공정거래법 해설

1.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규제

1.2.6.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관련 사례

기업집단 KT·포스코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 사건('17.10.17.)

- 법 위반행위: 舊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 ✓ 공정위의 3개 기업집단(KT, 포스코, 케이티앤지) 소속 86개 계열사 대상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 점검 결과, 2개 기업집단(KT, 포스코)소속 9개사가 1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됨

〈공시 점검 개요〉

- 대상 기업집단: KT, 포스코, 케이티앤지
- 점검 대상 기간: 2013년 4월 1일 ~ 2017년 4월 30일
- 점검 방법·일시: 서면·현장점검 / 2017년 7월 ~ 2017년 9월
- 주요 점검 사항: 공정거래법 제11조의 2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이행 여부

- ✓ 공시 위반 사항(KT: 12건/포스코: 2건)

- 계열사간 자금, 유가증권, 자산 거래 시 이사회 미의결·미공시

예1) 계열사간 자금, 유가증권 거래 시 이사회 미의결·미공시, 또는 이사회 의결 후 미공시

예2) 계열사 차입금 담보를 위해 보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사회 미의결·미공시

- 제재: 2개 기업집단에 과태료 총 4.99억원 부과(KT 총 3.59억원, 포스코 1.2억원)



1. 공정거래법 해설

1.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규제

1.2.7.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관련 FAQ

Q1

-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이 동일한 개념인지?

A1

- ✓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은 유사한 개념으로 쓰이긴 하나 공정거래법상 정의규정에 따르면 차이가 있음
-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란 ①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② 동일인 관련자 ③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기업 결합에 참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Q2

- 계열회사에서 “회사”는 상법상 회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A2

- ✓ 원칙적으로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회사를 의미함
- ✓ 다만, 그 실질상 영리행위를 하는 법인인 경우 회사에 해당될 수도 있음(영리성, 사단성, 법인성이 핵심 개념)
 - * 상법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 * 상법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 * 민법 제39조(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1. 공정거래법 해설

1.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규제

1.2.7.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관련 FAQ

Q3

- 현재 A라는 회사에 대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고, 다만 소속회사 임원 B가 A사 임원을 겸임하고 있을 뿐 임(자금대차, 채무보증, 거래 등 없음)이 경우, A사는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A3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 겸임 사실만으로 바로 계열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
 - ✓ 다만, 임원겸임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A사에 대한 지배력이 인정된다면 계열사 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음
- 예): 임원 B가 10% 지분을 보유(나머지 90%는 B의 배우자) 하고 있고, A사 대표로 재직 중인 경우

Q4

- '21.12. 전면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신설·변경된 거래 현황 관련 공시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A4

- ✓ 모든 계열사와의 물류 또는 IT 서비스 상품 용역 거래 현황 공시(매년 5/31까지. 신설)
- ✓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과 거래 현황 공시(매년 5/31까지. 신설)
- ✓ 직전 사업연도까지 국내 계열사에 판매한 상품·용역 거래금액 공시 시, 분기별 거래 금액도 함께 명시(변경. 국외 계열사 매출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간 거래금액 공시)



1. 공정거래법 해설

1.3. 부당 기업결합의 제한

1.3.1. 기업결합제한제도 개요

■ 의의

- 기업결합이란 2이상의 기업들이 인적, 물적 결합을 통하여 단일한 지배체제가 되는 것을 의미
- 기업결합은 통상적인 기업활동의 일환으로, 기업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반면에 기업의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고, 시장구조의 변동을 초래하여 시장을 경쟁제한적으로 변모시킬 우려도 있음
- 이에 공정거래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이 있는 경우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공정위가 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하여 그 허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제한유형

-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
- 다른 회사와의 합병
-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 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
-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다만, 특수관계인 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에 참여는 제외

■ 경쟁제한성 있는 기업결합으로 추정하는 경우

- 기업결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
 - (1) 시장점유율의 합계(계열회사 시장점유율 합산. 아래 세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①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1개 사업자 50%이상, 3개이하 사업자 75%이상)에 해당할 것
 - ② 해당 거래분야에서 1위일 것
 - ③ 1위와 2위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25%이상일 것
 - (2) 대규모 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회사. 아래 두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3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일 것
 - ②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



1. 공정거래법 해설

1.3. 부당 기업결합의 제한

1.3.2. 기업결합제한의 예외

■ 내용

- 다음의 경우에는 기업결합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음(공정거래법 제9조 제2항)
 - (1) 당해 기업결합 외 방법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큰 경우
 - (2)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 ① 기업결합을 하지 않는 경우 생산설비등 자산이 당해 시장에서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 ②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1.3.3. 기업결합의 신고

■ 신고대상인 회사

- 신고 의무 발생기준은 기업결합을 하는 회사들의 규모를 기반으로 하는 것과 거래금액을 기반으로 하는 것 두가지가 존재
- 회사 규모 기반 기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 합산)가 3천억원이상인 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의 다른 회사에 대하여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 공정위에 신고 필요

신고회사와 그 상대방 중 어느 한 회사라도 그 규모 미충족 시 신고의무 부담하지 않음
- 거래금액 기반 기준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이 6천억원 이상이면서, 직전 3년간 국내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 또는 제공한 적이 있거나,

직전 3년간 국내 연구 개발시설을 임차하거나 연구 인력을 활용하여 왔으며, 관련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적이 있는 경우 공정위에 신고 필요



1. 공정거래법 해설

1.3. 부당 기업결합의 제한

1.3.4. 심사기준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의 종류

- **간이 심사대상 기업결합**
 - 기업결합 당사자가 서로 특수관계인인 경우
 - 당해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취득회사 및 피취득회사)간에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아니 하는 경우
 - 대규모회사가 아닌 자가 혼합형 회사결합을 하는 경우
 - 경영목적이 아닌 단순투자활동임이 명백한 경우
 - 사모투자전문회사(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제외)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유동화 전문회사를 기업 결합한 경우
 - 기타 특정 사업의 추진만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당해 사업 종료와 함께 청산되는 특수목적 회사를 기업 결합한 경우
- **일반심사대상 기업결합 :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이외에 회사간 결합하는 경우**

1.3.5. 기업결합 신고 기한

- **내용**
 - 사후 신고 원칙: 원칙적으로 사후신고. 기업결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필요
 - 예외적 사전 신고 의무

기업결합 당사자 중 1개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는 계약체결일등 시행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기협 결합일 까지 미리 신고 필요
 - 기업결합일: 아래의 일자를 의미
 - 주권교부일(주권교부시), 주식대금지급일(주권미발행시)
 - 주식대금 납입기일 익일(신중상 취득 시, 회사설립 참여시), 주총임원선임 결의일(임원 겸임시)
 - 영업양수대금 지급완료일(영업 양수시)
 - 영업양수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경과하여 대금 지급시)
 - 합병등기일(합병 시)



1. 공정거래법 해설

1.3. 부당 기업결합의 제한

1.3.6. 사전 심사 요청

▪ 내용

- 신고기간 전이라도 기업결합이 실질적으로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결과를 30일 내(90일까지 연장 가능)에 통지

❖ 기업결합 신고 관련 사항 요약표

구분	신고 의무자	기업결합 유형	신고시기
사후 신고	대규모 회사 외의 자	주식취득	주권교부일등으로부터 30일
		합병	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영업양수	대금지불 완료일로부터 30일
		회사신설참여	주금 납입일 다음날부터 30일
	대규모 회사	임원겸임	결합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사전 신고	대규모 회사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계약일 완료 후 이행 완료 전
		회사 신설 참여	주총 의결일 이후 이행 완료 전



1. 공정거래법 해설

1.3. 부당 기업결합의 제한

1.3.7. 위반 시 제재

시정조치

- 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기타 법위반 상태의 시정을 위한 조치 명령
- 회사 합병, 설립조항 위반시 공정위는 합병 무효 또는 설립 무효의 소 제기 가능
-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당해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 불가

이행 강제금

- 시정조치를 받은 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다음날부터 이행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매1일당 아래 금액의 0.0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가능 (단, 임원겸임 위반시에는 1일당 200만원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 ✓ 주식소유위반 : 소유주식의 장부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 ✓ 합병위반 :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 ✓ 영업양수 위반 : 영업양수 금액
- 이행강제금은 부과일로부터 30일 내에 납부 의무

형사 처벌

- 해당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그 대표자 등과 함께 처벌
-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 제기 가능

과태료

-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행 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1억원 이하, 임직원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가능



1. 공정거래법 해설

1.3. 부당 기업결합의 제한

1.3.8. 부당 기업결합의 제한 사례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건('21. 8.24.)

• 개요

- ✓ 공정위의 위성방송사업자인 케이티스카이라이프(KTSKY)의 현대에이치씨엔(HCN) 주식취득 건 등 심의 결과, 2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조건부 승인

• 경쟁 제한성 판단

- ✓ 10개 관련 시장 중 디지털유료방송, 8VSB방송 2개 시장에서 결합으로 인해 경쟁제한성 있는 것으로 판단

* 판단 사유: 결합으로 인한 시장 점유율 상승, 요금인상 경쟁 압력 약화 등

- **(제재) 서울 관악구·동작구, 부산 동래구·연제구 등 8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및 8VSB 유료방송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부과 (이행기간: '24.12.31. 까지)**

〈 주요 시정조치 내용 〉

- ①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 ②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거부·해지 금지,
- ③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 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 ④ 신규가입·전환가입시 불이익조건 부과행위 금지,
- ⑤ 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 금지,
- ⑥ 고가형 상품전환 강요 금지,
- ⑦ 채널구성내역과 수신료 홈페이지 게재·사전고지 의무 등



1. 공정거래법 해설

1.3. 부당 기업결합의 제한

1.3.9. 부당 기업결합의 제한 FAQ

Q1

- 같은 기업집단의 계열사 A, B, C는 A사가 40%, B사가 30%, C사가 30%를 출자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려 하고 있음. 이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회사는 누구인가?

A1

- ✓ 신설회사 설립의 경우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 신고함
- ✓ 주식취득 또는 회사설립 참여의 경우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 비율 산정, 최다출자자가 되는지 여부는 당해 회사 특수관계인 소유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
- ✓ 질문의 경우 B사와 C사가 계열사 관계에 있어 60% 지분을 가진 최다출자자가 되고 두 회사가 모두 신고의무대상회사가 됨
- ✓ 다만, 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하나를 신고 대리인으로 지정해 신고할 수 있음

Q2

- 임원선임권이 발생하였으나, 임원겸임이 아닌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가?
(예) 전문경영인을 임원으로 선임시키는 경우)

A2

- ✓ 공정거래법은 '임원겸임'에 대해 임직원을 타 회사 등기임원으로 겸임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 즉, 임원선임권의 행사로서 임원을 겸임 시키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이 되며 임원겸임이 아니면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1. 공정거래법 해설

1.3. 부당 기업결합의 제한

1.3.9. 부당 기업결합의 제한 FAQ

Q3

- A사 직원이 A사의 경영전략과는 무관하게 다른 회사 B사의 이사와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러한 경우도 기업결합 신고 필요한지?

A3

- ✓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인 회사에 소속된 임원이나 직원이 타 회사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기업결합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 이 경우 지배관계를 떠나 임원겸임행위가 있으면 신고하여야 하며, 직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회사의 결정에 의한 것이든 등기 임원으로 등기되는 경우는 신고의무가 발생
- ✓ 단, 직원의 개인적인 겸임 등으로 회사가 이를 몰랐다는 사정이 있는 등 기업결합심사 면탈의 고의가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시 참작사유로서 고려는 가능



1. 공정거래법 해설

1.4. 계열사간 상호 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1.4.1. 계열사간 상호출자 금지

■ 의의

- 2개 계열회사간에 주식을 서로 보유하게 되는 상호출자는 상호보유주식의 규모나 지분율의 과다와 관계없이 전면 금지
- 비계열회사와의 상호출자는 금지되지 않으며, 이는 상호간의 출자가 별개의 의사결정 주체에 의해 결정된 점을 고려한 것임

■ 계열사간 상호출자 금지의 예외

-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 수령으로 인하여 상호출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상호출자 인정
- 이 경우에도 6개월에 한해 예외가 인정되므로 6월 이내에 두 회사 중 하나의 회사는 상대 회사 주식을 처분해야 함(공정거래법 제21조 제2항).

■ 위반 시 제재

- 해당 행위의 중지, 주식의 처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필요한 조치
-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날부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 행사 불가
- 위반한 금액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1. 공정거래법 해설

1.4. 계열사간 상호·순환 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1.4.2.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

■ 의의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 출자 금지
- 신규 순환출자고리의 형성 외에, 기존의 순환출자고리를 강화하는 추가적인 출자 역시 금지

■ 계열사간 출자 금지의 예외: 유예 기간 내 해당 주식 처분 필요

- 회사의 합병·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주식 취득·소유일로부터 6개월)
-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주식 취득·소유일로부터 6개월)
- 계열출자회사가 신주배정등에 따라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중에서 다른 주주의 실권(失權) 등에 따라 신주배정등이 있기 전 자신의 지분을 범위를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이 있는 경우(주식 취득·소유일로부터 1년)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를 개시한 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하여 동일인(친족을 포함한다)의 재산출연 또는 부실징후기업의 주주인 계열출자회사의 유상증자 참여(채권의 출자전환을 포함한다)를 결정한 경우(주식 취득·소유일로부터 3년)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금융채권자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로 동일인(친족을 포함한다)의 재산출연 또는 부실징후기업의 주주인 계열출자회사의 유상증자 참여(채권의 출자전환을 포함한다)를 결정한 경우(주식 취득·소유일로부터 3년)

■ 위반 시 제재

- 해당 행위의 중지, 주식의 처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필요한 조치
- 위반 금액의 10%이내 과징금 부과
-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신규순환출자 금지규정을 위반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제한



1. 공정거래법 해설

1.4. 계열사간 상호 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1.4.3. 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지

■ 의의

-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대출과 지급 보증)을 받을 때 동일 기업집단 소속 국내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은 금지
- 단,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되지 않은 기업과 기업간에 직접 행하는 보증은 금지되는 채무보증에 해당되지 않음

■ 채무보증 금지의 예외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합리화 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 ✓ 주식양도, 합병 등의 방법으로 인수되는 회사의 인수 시점의 채무나 양도하기로 예정된 채무에 대하여 인수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
 - ✓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를 분할 인수함에 따라 인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인수하는 회사의 계열사가 행하는 보증
-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증
 - ✓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업무)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기타 제품의 생산 또는 기술의 제공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행하는 대출 또는 이와 연계하여 다른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에 대한 보증
 - ✓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의 수행, 수출선박 건조, 용역수출 기타 공정위가 인정하는 물품 수출과 관련하여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입찰 보증, 계약이행보증, 선수금 환급보증, 유보금 환급 보증, 하자보수보증, 또는 납세보증에 대한 보증
 - ✓ 국내의 신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의 기업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의 구입 등 기술개발 사업을 위하여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보증
 - ✓ 인수인도조건수출, 지급인도조건수출 어음의 국내금융기관매입 및 내국 신용장 개설에 대한 보증
 - ✓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지점에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 ☞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 ☞ 해외 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행하는 외국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
 - ☞ 기타 공정위가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사업
 - ✓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제3자 인수와 직접 관련된 보증
 - ✓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4호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사에 출자를 한 경우로 국내금융기관이 당해 계열사에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 ✓ 공기업의 구조개편에 따른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자회사가 모회사인 공기업의 보증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재보증하는 경우



1. 공정거래법 해설

1.4. 계열사간 상호 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1.4.3. 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지

■ 탈법적 채무보증

-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의 채무를 면하게 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병존적 채무인수) 또는
- 다른 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게 하는 대신 그 다른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교차 채무보증)는 탈법적인 채무보증에 해당

■ 위반 시 제재

- 해당 행위의 중지 및 관련채무보증의 취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의 시정조치
- 법 위반 채무보증액의 20%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탈법행위에 대해서도 형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1. 공정거래법 해설

1.4. 계열사간 상호·순환 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1.4.4. 계열사간 상호·순환 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관련 사례

현대자동차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 사건('16. 5.19.)

- 법 위반 사항: 舊 공정거래법 제9조의2 '순환출자의 금지'

✓ 현대제철(존속)·현대하이스코(소멸)간 합병에 따라 각 합병 당시 회사 주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신(新)현대제철의 합병 신주를 취득하여 순환출자 강화가 발생

* (현대자동차) 합병 전 보유하고 있던 현대하이스코 주식 6,698,537주에 대한 대가로 배정받은 신(新)현대제철 합병신주 5,745,741주(4.31%)

* (기아자동차) 합병 전 보유하고 있던 현대하이스코 주식 3,570,405주에 대한 대가로 배정받은 신(新)현대제철 합병신주 3,062,553주(2.29%)

* 10개 관련 시장 중 디지털유료방송, 8VSB방송 2개 시장에서 결합으로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판단 사유: 결합으로 인한 시장 점유율 상승, 요금인상 경쟁 압력 약화 등

- (제재) 아래 사유 종합 고려 시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 경고 조치를 결정

**** 고려 사유**

- 1) 이 사건 추가적인 계열 출자는 지배력 강화·유지 보다는 침체된 철강 시장에서 합병을 통한 경영 효율성 증대 등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 2) 순환출자 금지 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로 공정위 유권 해석(2015년 12월 24일) 전까지 해소 대상인지 여부가 확정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던 점
- 3) 피심인들이 합병 전후로 별도 법률 자문을 거치는 등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점
- 4) 피심인들이 추가적인 계열 출자에 해당하는 현대제철 주식을 전부 처분하여 사건 심사 과정에서 조속히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 등



1. 공정거래법 해설

1.4. 계열사간 상호 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1.4.4. 계열사간 상호 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관련 사례

대한시스템즈(주)의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 사건('14. 9.25)

- 법 위반 사항: 舊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제1항 '채무보증 금지 규정'
 - ✓ 대기업 집단 대한전선 소속 대한시스템즈(주)는 국내 계열회사인 (주)티이씨앤알이 4개 저축은행(한국·진흥·경기·영남상호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에 '08. 6.. ~ '12. 4..간 최대 280억 원 한도의 채무 보증을 제공
 - ✓ 이러한 대한시스템즈(주)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채무 보증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
- (제재) 대한시스템즈(주)에 과징금 4.76억원 부과



1. 공정거래법 해설

1.4. 계열사간 상호·순환 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1.4.5. 상호·순환 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FAQ

Q1

- A사, B사, C사가 동일 기업집단 계열사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인 경우 A사가 C사 지분 약20%를 가지고 있고, B사는 A사·C사가 지분을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합작 회사라면, 이 경우에도 상호출자에 해당하게 되는지?

A1

- ✓ 공정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상호출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자신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말함
- ✓ 따라서, 본건 질의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상호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Q2

- 계열사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물권담보,예금담보 등)도 채무보증에 해당되는지?

A2

- ✓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인적보증을 의미하므로, 물적보증(물권 담보, 예금 담보 등)은 해당되지 않음
- ✓ 따라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사 금융기관 여신에 대하여 물적담보를 제공하여도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 ✓ 다만, 백지어음 제공의 경우 사실상 인적담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에 해당



1. 공정거래법 해설

1.4. 계열사간 상호·순환 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1.4.5. 상호·순환 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FAQ

Q3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의 해외 발행 채권에 보증을 제공하고 동 채권을 발행시장 또는 발행 완료된 후 유통시장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취득하는 경우는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인지?

A3

- ✓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채무보증은 국내 금융기관 여신과 관련하여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 계열사에 대해 행하는 보증을 말함
- ✓ 여기서 말하는 국내 금융기관에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도 포함하므로, 본건 질의와 같이 계열회사가 보증한 사채를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인수한 경우도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채무보증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음



2. M&A 관련 공정위 시정명령의 이행

2.1. 공정위 시정명령의 내용 [舊 대우조선해양(現 한화오션) 인수 관련]

- 시정명령 대상회사: 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② 한화시스템, ③ 한화오션
- 시정명령 대상품목: 함정탑재장비 10개 품목 (단, **관급**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생산 품목	한화시스템 생산 품목
함정항법장치, 함정사격통제장비, 함정용발사대, 잠수함용 리튬전지체계, 함정용 엔진	전자광학장비, 함정전투체계, 함정피아식별장비, 유도탄능동유인체, 함정 통합기관제어시스템

- 시정명령 이행보고 일정

회차	반기 종료일	이행보고 기한	회차	반기 종료일	이행보고 기한
1회	2023. 11. 3.	2023. 12. 3.	4회	2025. 5. 3.	2025. 6. 2.
2회	2024. 5. 3.	2024. 6. 2.	5회	2025. 11. 3.	2025. 12. 3.
3회	2024. 11. 3.	2024. 12. 3.	6회	2026. 5. 3.	2026. 6. 2.

**향후 3년간 아래 3가지 행위 금지, 반기별 이행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하여야 함**

- ① 견적가격 차별 제공
- ② 기술정보 제공 거절
- ③ 경쟁사업자 영업비밀 유출



2. M&A 관련 공정위 시정명령의 이행

2.1. 공정위 시정명령의 내용 [舊 대우조선해양(現 한화오션) 인수 관련]

시정명령 전문

1. 피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 피심인 한화시스템 주식회사, 피심인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이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간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수상함 및 잠수함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피심인들의 계열회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가. 피심인들 및 그 계열회사가 공급하는 별지 목록 기재 장비(이하 ‘함정 탑재장비’라 한다)의 **견적가격**에 관하여 피심인들의 계열회사가 아닌 수상함 및 잠수함 건조업자와 피심인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간에 **부당하게 차별하여 제공**하는 행위
 - ② 나. 피심인들의 계열회사가 아닌 수상함 및 잠수함 건조업자가 **입찰 제안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 제공을 방위사업청을 통하여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다만, 해당 함정 탑재장비의 경쟁사업자인 건조업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다. 입찰 과정에서 피심인들 및 그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함정 탑재장비 또는 함정과 관련한 **영업비밀**을 해당 경쟁사업자의 **동의 없이** 피심인들 및 그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
2. 피심인들은 이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년 간 **매 반기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 가. 내지 다.의 이행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이시정명령의 효력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 간의 시장상황의 변동 등을 검토하여 시정명령을 연장할 수 있다.
4. 피심인들은 위 3.의 기간 동안에도 시장상황의 변동 등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상기 조치들의 수정, 변경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2. M&A 관련 공정위 시정명령의 이행

2.2. 공정위 시정명령 위반 시의 제재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관련 임직원 및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제재
 - ① 관련 임직원 및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임직원 및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법 제125조 제1호)

- ✓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행강제금 부과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 정해진 기한 내에 시정조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 ✓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최대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X 0.0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 그외, 수상함 및 잠수함 입찰에서 벌점을 받거나 입찰 참여 자체가 불가하게 되는 사업적 불이익을 입을 수 있음



2. M&A 관련 공정위 시정명령의 이행

2.3.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체크리스트

2.3.1. 견적가격 차별제공

1	동일한 입찰에 참여하는 함정 건조업자들이 동일한 스펙의 함정 탑재장비 견적가격을 요청하였을 때 동일한 견적가격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3번으로
2	계열회사인 대우조선해양과 타 함정 건조업자에게 동일한 견적가격이 제공되었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3번으로

■ 1. 이행명령 위반여부 판단을 위한 1차 기준

→ 계열사와 비계열사 모두에 대해 동일 조건에 동일한 견적가격이 제시되었다면 더 살펴볼 필요 없음

■ 2. 견적가격이 달라진 경우 다음 질문으로 이동

3	서로 다른 견적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거래조건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해당 사유에 체크) ① 함정 탑재장비의 사양이 다름 ② 계약상 요구 업무범위가 다름 ③ 납기 등 계약 세부조건이 다름 ④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견적 제반요건이 변경됨 ⑤ 기타	☐ 예 → 차별제공 가능 ☐ 아니오
4	다음 사항을 포함한 견적가격 제공 보고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 ① 견적가격을 요청한 함정 건조업자 ② 견적가격을 요청받은 날짜 ③ 관련 입찰명 ④ 견적대상 함정 탑재장비명 및 스펙 ⑤ 견적가격 ⑥ 동일한 함정 탑재장비에 대해 타 함정 건조업체(계열회사 포함)에게 제공된 견적가격 ⑦ 위 ⑤와 ⑥이 다른 경우 그 사유(가격에 영향을 준 거래조건 차이)를 상세히 기재	☐ 예 ☐ 아니오

■ 3.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 판단 → 합리적 사유 존재 시 다른 견적을 제공하더라도 부당하지 않음

■ 4. 견적가격 제공 보고서 작성 확인



2. M&A 관련 공정위 시정명령의 이행

2.3.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체크리스트

2.3.2. 기술정보 제공거절

1	입찰에 참여하는 합정 건조업자로부터 방사청을 통해 기술정보 제공 요청을 받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거절 가능
2	동일한 기술정보가 계열회사에 제공되었는지 여부	☐ 예 → 제공 필요 ☐ 아니오

- 1. 기술정보 제공 요청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
- 2. 동일한 기술정보가 계열회사에 제공된 사실이 있다면, 공정한 경쟁을 위해 동일한 입찰에 참여하는 합정 건조업자에게도 동일한 기술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3	요청받은 기술정보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해당 사유에 체크) ① 영업상 비밀로서 유출 시 합정 탑재장비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방사청에서 요청 대상 기술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 ③ 관련 법령상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④ 타사와의 계약(ex: 라이선스계약 등)상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⑤ 객관적으로 입찰 제안서 작성과 관련이 없는 경우 ⑥ 합정 탑재장비의 경쟁사업자인 건조업자가 요청한 경우 ⑦ 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술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 예 → 거절 가능 ☐ 아니오
4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술정보 제공 보고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 ① 기술정보 제공을 요청한 합정 건조업자 ② 기술정보를 요청받은 날짜 ③ 관련 입찰명 ④ 방사청 담당자 ⑤ 요청받은 기술정보의 내용 및 제공 여부 ⑥ 제공한 기술정보 자료 ⑦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 ⑧ 기술정보를 제공한 날짜(방사청에 제출한 날짜) ⑨ (첨부) 방사청으로부터 수령한 기술정보 제공 요청 공문	☐ 예 ☐ 아니오

- 3.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 판단
→ 합리적 사유 존재 시 제공을 거절하더라도 부당하지 않음
- 4. 견적가격 제공 보고서 작성 확인



2. M&A 관련 공정위 시정명령의 이행

2.3.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체크리스트

2.3.3. 경쟁사업자 영업비밀 유출

경쟁사업자 영업비밀 유출	1	입찰 과정에서 취득한 함정 탑재장비 또는 함정과 관련한 영업비밀인지 여부	☐ 예 ☐ 아니오 → 제공 가능
	2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함에 있어 해당 경쟁사업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예 → 제공 가능 ☐ 아니오

- 1. 시정명령의 대상(경쟁사업자의 영업비밀) 여부 판단
- 2. 계열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판단

II. 공정거래 관련 법규

1.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규



1.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규

※ 법규 클릭 시 해당 법규로 이동

구분	법규명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시·지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기업결합
	•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지침
	•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기업결합 심사기준
	•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경제력집중억제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 합병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1.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규

※ 법규 클릭 시 해당 법규로 이동

구분	법령명
	부당공동행위
고시·지침	•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신청요령
	• 공동행위심사기준
	•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불공정거래행위
	•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심사절차
	•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위 지침
	•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 재신고사건 민간심사자문위원회 운영지침
	• 재신고사건 처리지침



1.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규

※ 법규 클릭 시 해당 법규로 이동

구분	법령명
	기타
고시·지침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
	•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 대한 경비지급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 공동행위 심사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위 지침
	•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 사업자단체활동지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1.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규

※ 법규 클릭 시 해당 법규로 이동

구분	법령명
	기타
고사·지침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
	•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 운영지침
	•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 사업자단체활동지침
	•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End of document

- 발행부서: 한화시스템(주) 컴플라이언스팀
- 개정판 발행연월: '25.12.

※ 본 자율준수 편람의 무단 복제·배포·수정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

※ 본 자율준수 편람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컴플라이언스팀 담당자 (jangsw@hanwha.com/02-729-4929)앞으로 문의 바랍니다.